

오산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	2007년	6월	5일	조례	제 932호
개정	2009년	5월	14일	조례	제1028호
일부개정	2018년	10월	11일	조례	제1676호
일부개정	2021년	5월	17일	조례	제1911호
전부개정	2026년	5월	6일	조례	제2373호

(제명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오산시 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오산시 자율방재단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설치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오산시 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은 시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에 따라 오산시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2. “동 자율방재단”(이하 “동 방재단”이라 한다)은 방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동 단위로 구성된 방재단을 말한다.
3. “오산시 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방재단의 활동 및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구성한 기구를 말한다.
4. “단체”는 방재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민간에서 활동하는 법인 또는 사회단체 등을 말한다.

제4조(방재단의 구성) ① 방재단은 단장, 부단장, 사무국장 및 그 외 단원으로 구성하며,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한다.

②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60조제3항에 따라 임명된 방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한다.

③ 방재단의 부단장(이하 “부단장”이라 한다)과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은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오산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④ 단원은 단체단원과 개인단원이 있고, 전문성에 따라 일반단원과 전문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 ⑤ 시장은 단원이 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접수하여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단원을 위촉한다.
- ⑥ 방재단의 단원 가입자격은 시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소재지를 둔 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의 단체 및 개인을 단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 ⑦ 영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동 단위로 “동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 ⑧ 동 방재단원은 시 방재단의 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 ⑨ 동 방재단의 대표(이하 “동 대표”라 한다)는 동 방재단의 재적단원 과반수의 참석에 참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은 사람으로 단장이 위촉한다.

제5조(임원의 임무 등) ① 단장은 방재단 직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 ③ 사무국장은 방재단의 행정 및 회의기록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 ④ 동 대표는 동 방재단을 대표한다.
- ⑤ 단장·부단장·사무국장·동대표·단원 등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해임 및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단장이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3. 단장이 타 지역 이주 등 대표자격을 상실한 경우
 4.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성추행, 불법촬영 등 성폭력 사안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로서 단장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하거나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단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진출한 경우(단, 제4조제6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성추행, 불법촬영 등 성폭력 사안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자율방재협의회) ① 방재단의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협의회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는 위원장이 단장이 된다.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부단장
2. 동 대표
3. 방재 전문가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

⑤ 협의회는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협의회는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협의회는 방재단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8조(방재단의 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순찰
2. 법 제45조에 따른 행동 요령 및 대피소 홍보
3. 방재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실시
4. 주민 및 유관 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유지
5. 비상시 주민 대피 유도 및 차량 통제

오산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6. 대피소 관리 및 구호에 필요한 물자의 관리
7. 재해복구
8.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지원(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② 제1항에 따른 방재단의 구체적인 활동 범위는 시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단장은 효율적인 방재단 활동을 위하여 기능별로 반(班)을 나누고, 각 반별로 활동을 세분화할 수 있다.

제9조(소집 등) ① 영 제61조에 따라 방재단을 소집하는 경우에는 전화, SNS 등 통신 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영 제61조제2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 해당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③ 제2항의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의 활동에 대하여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활동확인서에 따라 소집수당을 지급한다.

제10조(운영 등) ① 단원은 방재단 활동을 완료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작성하여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의 활동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사항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6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등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재난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단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보험 등의 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제10조제6항의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과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경비 보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의 직접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식대·여비 및 유류비 등의 필수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부상 및 질병 등을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3. 제복·모자 및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5. 단원의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또는 교육과 훈련 등에 필요한 비용
6. 중앙지원단 자문에 필요한 비용
7. 그 밖에 방재단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

③ 시장이 단원에게 활동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한 후 해당 단원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명칭사용)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자율적인 방재활동에 관한 고유업무 또는 행위에 대해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13조(출입증 발급)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자연재난 등의 현장을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출입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교육 및 훈련) ①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르며,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교육
 - 가. 단장 : 연 4시간 이상
 - 나. 단원 : 연 2시간 이상
2. 훈련 : 연 4시간 이상

오산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②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 사항은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을 따른다.

제15조(중앙지원단의 자문) ① 시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중앙지원단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재해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①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재해보상금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재해보상청구서를 단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방재활동과 관련된 단체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1. 요양보상 :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해보상 : 해당 단원이 재해로 인하여 장애등급을 확정받은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 해당 단원이 재해로 사망한 날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재해보상금을 받는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의 상속 순위를 따른다.

③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같은 순위자가 자신들 또는 자신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동순위자 모두가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그 대표자에게 재해보상금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 및 위임 확인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법정대리인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④ 시장은 재해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 4의 비고 제6호에 따른 보상금의 종류별 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26. 5. 6 조례 제2373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재단 구성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구성된 방재단과 동 방재단, 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임원 및 위원 등의 임기는 기존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별표]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제16조제5항 관련)

보상등급		보상금 결정 기준	비고
요양보상		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5년분	
장제보상		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3월분	
유족보상		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10년분	
신체 등 급별 장 해 보상	제1급	유족보상금의 100/100	※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제2급	유족보상금의 88/100	
	제3급	유족보상금의 76/100	
	제4급	유족보상금의 64/100	
	제5급	유족보상금의 52/100	
	제6급	유족보상금의 40/100	
	제7급	유족보상금의 20/100	
	제8급	유족보상금의 10/100	
	제9급	유족보상금의 5/100	

비고

1. 요양보상: 오산시 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진료비·치료비·수술비·약제비·입원비 등을 지급한다.
2. 장해보상: 오산시 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등급별 장해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2가지 이상의 신체장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른다.
3. 장제보상: 오산시 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4. 유족보상: 오산시 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5. 제3호 및 제4호에서 “유족”이란 사망한 오산시 자율방재단 구성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를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임명장

주소

성명

귀하를 오산시 자율방재단장으로
임명합니다.

년 월 일

오산시장

[별지 제2호서식]

오산시 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개인)

등록번호 :

성 명	○○○(성별)	연 령		혈 액 형	
주 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자 격 증 또는 기능		운전가능여부 (면허종류)			
재 난 현장경험	※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희 망 활동내용	※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특이사항]					
※ 재난과 관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기재					

상기 본인은 오산시 자율방재단 가입을 희망하기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하는 사람 ○ ○ ○ (서명 또는 날인)

오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오산시 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단체)

등록번호 :

단 체 명		대 표 자	○ ○ ○ (휴대전화)	
주 소			대표전화	
담 당 자	○ ○ ○ (휴대전화)	부서명		
인 원	남 ○○명	여 ○○명	총인원	○○명
장 비	장비명(규격) ○○ 대	장비명(규격) ○○ 대	장비명(규격) ○○ 대	장비명(규격) ○○ 대
지원가능	남 ○○ 명	장비(규격) ○○대	장비(규격) ○○대	장비(규격) ○○대
	여 ○○ 명			
전문분야	※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활동희망분야	※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특이사항] ([별지 제4호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				

상기 본 단체는 오산시 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가입희망 회원명부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 ○ ○ (서명 또는 날인)

오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활 동 확 인 서

성 명		(인)	등록번호	※ 서식2의 등록번호	
활동내용	사 유	※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방 법	※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시 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시간)			
	장 소	※ ○○동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			
	내 용	※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마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			
[건의사항] ※ 활동 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					
확인자	직 위	오산시 자율방재단장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확인자는 단장 또는 현장 총괄책임자 등

본인은 오산시 자율방재단의 단원으로서 상기와 같이 활동하였기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오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록 번호	성 명	활 동 상 황		활동사항
		횟수	시간	
1				
2				
3				
⋮				

※ 등록번호

- 개인의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번호를 기재
- 단체의 경우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번호와 [별지 제4호서식]의 연번을 붙여서 기재

[(예) 10-1]

※ 횟수, 시간은 활동확인서의 활동시간을 합하여 관리

※ [별지 제5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기초로 작성되어야 함

※ 활동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방재단 사무실에 제출

[별지 제7호서식]

○○년도 연중 활동계획서

[오산시 자율방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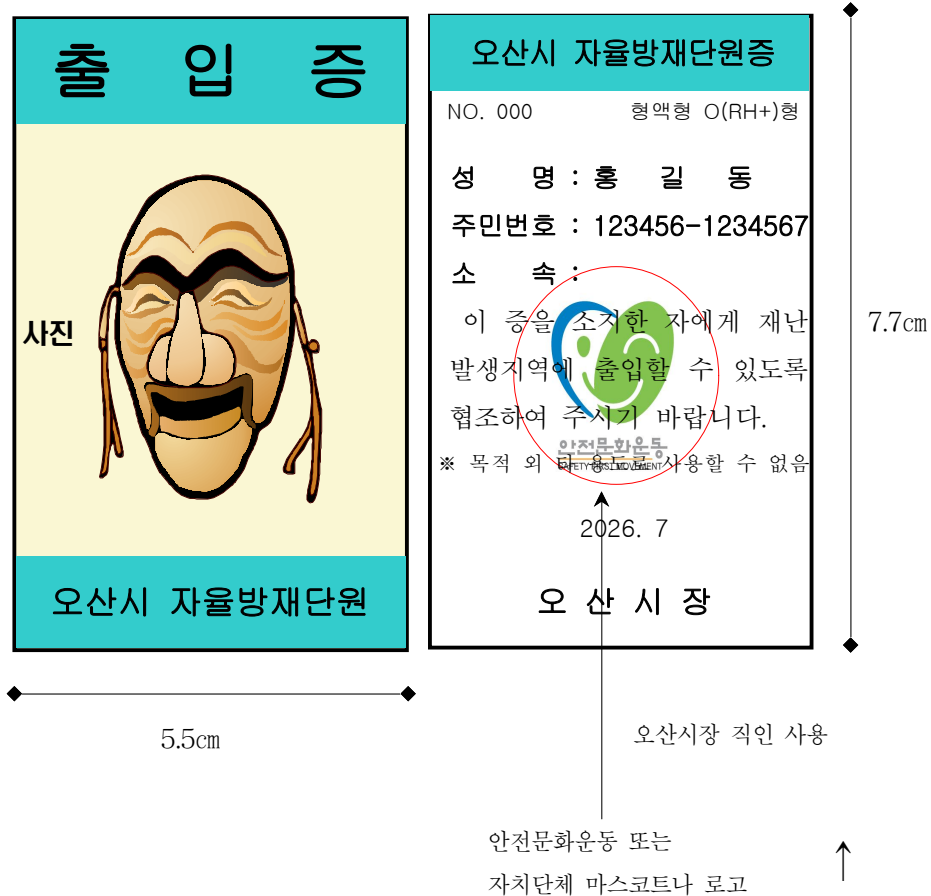
월 별	주 요 내 용	비 고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 세부사항은 별도붙임 가능

※ 오산시 재난안전관리계획과 연계하여 작성

[별지 제8호서식]

출 입 증



[별지 제9호서식]

재해보상 청구서

요양 [], 장해 [], 장제 [], 유족 []

※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사고자	소속	전화번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인	주소	전화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고자와관계		
사고경위 및 요양	사고(사망)일시		
	사고(사망)장소		
	사고경위		
	1. 화재 【 】 2. 구조 【 】 3. 구급 【 】 4. 기타 【 】		
	요양(진단)병원	요양(진단)부위	
	요양(진단)결과	요양기간	
청구금액	요양보상	장해보상	
	장제보상	유족보상	
	청구금액		
지급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및 「오산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_____ (서명 또는 인)

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_____ (서명 또는 인)

오산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오산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뒤쪽)

청구인 제출서류	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오산시 자율방재협의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 ⑧ 신분증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본인정보 제공요구	요양·장애보상: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입급계좌확인정보 장제·유족보상: 입급계좌확인정보 장제·유족보상: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및 본인정보 제공요구서

1. 본인은 위 청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위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항목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함 동의하지 않음)

2. 본인은 위 청구와 관련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본인정보제공 요구를 통해 이용기관의 담당공무원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함 동의하지 않음)

※ 위 사항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성명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